

사회복지법인 송원

이 사 회 회 의 록

1) 회의 통보일자 : 2025년 04월 16일

2) 회의 개최일시 : 2025년 04월 25일 15:00

3) 회의 개최장소 : 법인 사무실

4) 회의 종 류 : 임시 이사회

5) 회의 참석인원 : 대표이사 : 하윤석

이 사 : 라정현, 이병문, 정미경

6) 안 건 : - 당 법인 정관변경의 건.

- 송원노인전문요양원 치유숲길 조성에 따른 토지사용 승락 건

- 당 법인 산하시설 업무 지도·점검의 건.

== 토의 내용 ==

대표이사 : (인사말 생략) 이사 과반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선언하고 토의에 들어가다.

▶ 안건) 1안> 당 법인 정관변경의 건.

2안> 송원노인전문요양원 치유숲길 조성에 따른 토지사용 승락 건.

3안> 당 법인 산하시설 업무 지도·점검의 건.

대표이사 하윤석 :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 법인 정관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변경 권고가 있었습니
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사님들의 사정상 3분의 2 참석이 안되어 제1안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 법인 정관변
경의 건은 다음 회의 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 일 동 : 이에 동의하다.

대표이사 하윤석 : 다음 안건은 당 법인 산하시설 송원노인전문요양원 치유숲길 구성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 건입니다.

치유숲길 구성을 위해서는 해당토지의 소유자인 주명진님과 사회복지법인 송원의 토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주명진님께는 이미 승낙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이사회에서 산림 치유숲길 조성 건은 이사회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송원의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 사 이병문 : 예, 토지사용 승낙에 동의합니다.

이 사 정미경 : 이병문 이사님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이 사 일 동 : 이에 동의하다.

대표이사 하윤석 : 다음 안건은 당 법인 산하시설 업무 지도·점검의 건입니다. 제안자인 라정현 이사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라정현 : 예, 제가 올해 1월 이사로 취임하여 법인 정관 및 운영규정 등을 살펴 보니 법인은 연1회 이상 산하시설의 행정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의 이행을 제안 드립니다.

이 사 정미경 : 지도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사 라정현 : 법인운영규정 제122조에 따르면 법인은 연1회 이상 산하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여 법인 산하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 정미경 : 조직구성 및 점검 분야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이 사 라정현 : 예, 법인운영규정 제122조 제4항에서 지도점검위원회는 상임이사, 법인사무처 직원, 산하기관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검 분야는 산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면 되고 산하시설별로 교차 지도점검을 하면 됩니다.

이 사 정미경 : 네. 몇 년간 산하시설에 법인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더욱 투명한 법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정현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 일 동 : 정미경 이사의 의견에 동의 및 제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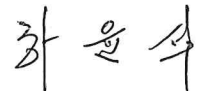
대표이사 하윤석 : 본 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어 의안통과를 선언하고, 폐회를 구하다.

이 사 일 동 : 이에 동의하다

대 표 이 사 : 참석이사 전원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다.

사회복지법인 송 원

2025년 04월 25일 15:00

대표이사 :  

이 사 :  

라재현 

정미경 

감 사 :  
